



제325회 정례회  
2013. 11. 26.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3년 11월 04일

○ 회부일자 : 2013년 11월 06일

###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sup>1)</sup>」과 「지방공무원 임용령<sup>2)</sup>」,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sup>3)</sup>」, 「전문경력관 규정<sup>4)</sup>」의 제·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안 제3조 제1항, 별표1)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 고
현행비율	53%이상	46.5%이내	0.5%이내	
개정비율	99.9%이상	삭제	0.1%이내	정무직 포함

1)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일부개정 / 2013.12.12. 시행

2)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11.20. 일부개정 / 2013.12.12. 시행

3) 대통령령 제24857호, 2013.11.20. 제정 / 2013.12.12. 시행

4) 대통령령 제24854호, 2013.11.20. 제정 / 2013.12.12. 시행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개정(안 제3조제1항, 별표2)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경력관
현행비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5%이상	신설
개정비율	1.1%이내	5%이내	23%이내	34%이내	36.4%이상	0.5%이내

다.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삭제

라.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안 제4조, 별표3)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고
개정전	1,645명	1,232명	13명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1,245명)을 일반직 정원에 포함
개정후	2,890명	0명	0명	
증△감	1,245명	△1,232명	△13명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문경력관 규정」이 제·개정 되어 2013. 12. 12.시행 예정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폐지, 전문경력관 신설 등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채정 기준의 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교육청의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역산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3.12.12] 제2조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2.12.11] [시행일 : 2013.12.12] 제4조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3.12.12.예정]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11.20. 일부개정]

제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의3, 제3장제1절,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9조까지, 제5장,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문경력관”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제1조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을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항의 계급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

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3.12.12.예정] [대통령령 제24857호, 2013.11.20.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제11531호)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의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방법)**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일에 타 법령에서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된 뒤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 직렬(관리운영직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직렬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에서 전직시험을 통해 전직임용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 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13.12.12.예정] [대통령령 제24854호, 2013.11.20.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의 직무군이 지정된 직위(이하 “전문경력 직위”라 한다)에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으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경력관의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 **전문경력관 직무군 구분**(제4조제1항 관련)

직무군	구 분
가군	해당분야에 대한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나군	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다군	해당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6.12] [대통령령 제24530호, 2013.5.8.]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